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4. 12(월)

문교사회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3. 24.

나. 제안자 : 이명숙·정종섭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0. 3. 24

라. 상정일자 : 2010. 4. 5(제183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 제안설명 : 이명숙 의원
- 검토보고 : 문교사회전문위원 유한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사업은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희망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시행되어 왔음.
- 그러나 그 취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 자활 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책 부족 및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불분명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중한 역할 부담, 실질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기반조성과 광역규모의 사업지원, 시와 군·구간의 사업 연계와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저소득층의 빈곤해결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활지원계획,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5조)
- 시장은 효과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명숙·정종섭 의원이 2010년 3월 24일 공동 발의한 조례안 임.

주요 검토 내용

- 조례안 제1조(목적)은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원칙을 준수하여 의미가 중복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와 “사회취약계층”의 부분 등을 정리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5조(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서 “자문기관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자활지원계획과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근거를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관련 규정과 용어를 통일하는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2조(정의) 및 제8조(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와 관련하여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군·구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관할 기관을 군·구청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2조의 정의 규정과 제8조의 “지역자활센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하나로서 제8조 제1항의 “시장은 -----자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은 센터의 지정 주체에 대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제8조 제2항은 광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 취지를 볼 때 “연구·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조사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 심의회·위원회 등

- 조례안 제7조와 제9조는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로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에 중복된 “자활사업실시기관”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에 부합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특이사항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김용근, 이명숙, 최만용, 박창규, 오홍철, 정종섭 위원

6. 수정안 요지

- 안 제1조의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을 위하여”를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로 하고
- 안 제2조 제2호의 “지정 설립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 안 제3조 중 “이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 안 제4조의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인천광역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광역자활센터)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자활사업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을 위하여”를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지정 설립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안 제3조 중 “이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로 한다.

안 제4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한다.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광역자활센터)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9조를 제8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u>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을 위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광역자활센터”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u>지정</u>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라 함은 법이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지정</u>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 6. (생략)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p>	<p>제1조 (목적) ----- ----- ----- ----- <u>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u> ----- ----- -----.</p> <p>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2. ----- ----- ----- ----- ----- <u>지정된</u> ----- -----.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3. ~ 5. (제정안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u>법령의 범위 안에서</u> ----- ----- ----- -----.</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4조 (위원회의 설치) ----- ----- ----- ----- ----- <u>둘 수 있다.</u></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인천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u> 2. (생략) 3. <u>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u> 4. ~ 5. (생략) <p>②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자활지원계획에 ----- ----- 2. (제정안과 같음) 3. <u>사회복지기금의</u> ----- ----- 4. ~ 5. (제정안과 같음) <p>②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u> 2. <u>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u> 3. <u>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u> 4. <u>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u> 5. <u>그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u> 	<p><삭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8조(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9조(자활사업 지원)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u> <u>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u> <u>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u> <u>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u> <u>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u> <u>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u> 	<p><u>제7조(광역자활센터)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8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u> <u>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 교육 및 취업알선</u> <u>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u> <u>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u> <u>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u> <u>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u> <p><u>② 시장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u> <u>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u> <u>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u> <u>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u> <u>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u>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9조(시행규칙) ----- ----- -----.</p>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자활근로사업단”이라 함은 보장기관 혹은 자활사업 수행기관에 의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
4.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활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 및 다음 년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년도 및 다음 년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년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광역자활센터)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활사업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5.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공동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